

## 2022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 연구사업자 설립·확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지역기업의 R&D 역량강화 및 국가 R&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『2022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 연구사업자 설립·확대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5월 13일

대구광역시장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### 1

#### 지원목적

- 단순생산형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(이하, 연구소) 및 연구개발전담부서(이하, 전담부서) 설립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
- 전문 연구사업자(이하, 연구사업자) 등록 확대를 통한 지역 R&D 수행구조 고도화 및 효율화 추진

### 2

#### 지원개요

- 지원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2. 11. 30.
  -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선착순 접수·지원하며 컨설팅 기간을 고려하여 '22. 10. 31.까지 접수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
- 지원대상
  - 대구지역 내 연구소/전담부서 및 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
  - ※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 및 지원 분야별 신고(인증) 요건은 [붙임 2] 참조

지원분야	지원대상
기업부설연구소/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규 및 재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설립 희망 기업</li> <li>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희망 기업</li> <li>■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</li> </ul>
전문 연구사업자 설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규 및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등록 희망 기업</li> <li>■ 기타 전문 연구사업자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</li> </ul>

- \* 전문연구사업자 : 연구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적·물적·매출액 요건을 준수하고 일부 연구개발의 외부수탁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재료/장비의 생산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
- \*\* 지역 외 기업은 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

### □ 지원내용

- 대구 TP에서 전문 컨설팅위원 1:1 매칭
- 기업 설립요건 분석 후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접수절차 등 컨설팅 진행
- 설립에 따른 기업 혜택 안내
-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컨설팅 지원(중복 신청 시 최대 6회까지 지원)
  - \*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문 연구사업자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, 1명의 전문 컨설팅위원으로 컨설팅 진행
  - \*\* 컨설팅 비용은 대구TP에서 부담
-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

## 3 신청방법

- 신청서(양식) 교부 :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
  -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ttp.org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
- 공고 및 접수기간 : '22. 05. 13(금) ~ 10. 31(월) 수시접수
  - ※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.
- 제출서류 : [붙임] 지원사업 신청서 스캔본 1부
- 신청방법 : ①이메일 접수 → ②담당자 확인 → ③전문 컨설팅위원 매칭
  - 이메일 : [kyh920@ttp.org](mailto:kyh920@ttp.org)
  - ※ 이메일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유선연락 필수

## 4

### 문의처

- 담당자 : R&D 지원팀 김영현 주임연구원

(Tel : 053-757-3738 / E-mail : [kyh920@ttp.org](mailto:kyh920@ttp.org))

## 5

### 유의 사항

-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될 수 있음
- 요구양식 이외 양식은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 6

### 제외 대상

-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기업이 부도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  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  -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  - 그 외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※ 제외 대상 여부는 컨설팅 진행 시 서류검토를 통해 판단